



고용노동부

보도참고자료



안전망강화
한국판뉴딜

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도일시 | 2021. 7. 11.(일) 배포 즉시 / 총 4쪽 | | |
| 담당부서 |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| 과장 임동희 사무관 김대근 | 044-202-7470 044-202-7471 |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원격수업·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.



- 「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」: 1일 5만원, 최대 10일간 지원

- 고용노동부(장관 안경덕)는 금년 4월부터 「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」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,
 - 최근 수도권외의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원격수업,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.
 - * 7.12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, 수도권의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및 어린이집 휴원 등 예정
- 참고로, 「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」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·휴교·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(또는 만 8세 이하<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>)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,
 -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,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사업이다.
 - *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(최대 50만원)하여 휴가사용 촉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

- 정부는 이 사업을 당초에 '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였으나,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3월 추경에 사업예산을 반영하였다.
-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(www.moel.go.kr)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·우편 등을 통해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.
 - * 세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
 - **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청·접수 권장
-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“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 등에 대응하여,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.”고 밝혔다.

< 붙 임 >

1. 「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」 안내
2.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

| | | |
|--|--|--|
|  <small>공공누리</small> |  <small>공공의익을 자유이용하라</small> |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김대근 사무관(☎044-202-7471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 |
|--|--|--|

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

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
지원대상



'21.1.1.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

※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거나,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등은 지원 제외

지원내용



1일(8시간) 5만원

최대 10일간 지원

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



① 가족(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손자녀)이 **코로나19 감염병환자, 감염병의사(疑似)환자,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**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

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,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

-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,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, 휴업·휴원·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, 격일(주) 등원·등교·통원,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(원) 하지 못하게 된 경우
- 코로나19 관련 등교, 등원,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은 경우
-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

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신청기간



2021년 4월 5일(월) ~ 12월 10일(금)

*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 신청 가능

신청방법



고용노동부 누리집* 또는 고용센터 방문·우편으로 신청

(가족돌봄휴가 확인서, 주민등록등본(또는 가족관계증명서), 휴가 사용사유 증명서류 등 첨부)

* 고용노동부 누리집(www.moel.go.kr) > 민원 > 민원신청 > 가족돌봄* 검색 > 신청서 작성 및 제출



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(국번없이 1350)
고용노동부 누리집(www.moel.go.kr) 참조

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



1 가족돌봄휴가란

가족돌봄휴가



근로자가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(무급) 휴가(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)

허용예외



사업주는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(질병 등으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)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

2 가족돌봄휴가 기간 및 신청 방법

휴가기간



연간 최대 **10일**(1일 단위로 사용 가능)
※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

신청방법



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, 돌봄대상 가족의 인적사항,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, 신청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**사업주에게 제출**

3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



'21.1.1.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(8시간) **5만원**, 최대 **10일** 지원
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(고용노동부 홈페이지) > 뉴스-소식 > 공지사항) 참고

가족돌봄휴가제도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

